

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 관한 지침

개정 1992.10.10 공업진흥청고시 제92-771호

공업진흥청에서는 형식승인유효기간 갱신 및 공장사후관리제의 개선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중 개정고시(공업진흥청고시 제92-771호, '92. 10. 10)를 하였는바 이를 전기용품제조업계에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을 품질경영체제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7 조(형식승인유효기간갱신) ①법 제11조(형식승인유효기간)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(형식승인의 유효기간갱신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14호 서식에 그 전기용품에 관한 종전의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안전관리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안전관리협회장은 해당 제조업체에 출장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생산제품의 법정시료를 채취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. 이 때 시험의뢰자

는 당해 제품의 생산업체 대표가 된다.

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지정시험기관은 당해제품에 대하여 시험하고 제12조의 내용을 안전관리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안전관리협회장은 품질검사결과등 갱신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에 합당한 업체에 대해서는 갱신승인서를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갱신발급을 요청함과 동시에 갱신요건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그 미달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공업진흥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갱신발급요청에 대해서는 갱신승인서를 발급하여 안전관리협회장에게 송부하고 기준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갱신불허 통보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한다. 다만 기술기준미달항목중 경결합사항에 대해서는 갱신과 동시에 제15조 제1항 3호에 의거 개선명령 조치한다.

⑥안전관리협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갱신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해야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(제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) ①시·도지사 또는 공업진흥청장은 등록 제조업자에 대하여 정기사후관리 및 특별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정기사후관리는 각 시·도지사가 실시하되 시·도지사는 관할 전기용품 제조업등록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별표 1 “전기용품 공장검사 평가기준”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사후관리현황 보고서와 공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동 평가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기술기준 미달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게 처분요청 하여야 한다.

③특별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업진흥청장이 실시하며 해당품목을 관장하는 부서, 단체 및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다만 이 경우 공장검사와 제품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.

1. 제품의 품질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
2. 소비자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3. 소비자의 안전침해우려 및 사회적 물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제2항에 의거 공장검사를 실시한 시·도지사는 월별 정기공장검사 실적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1993. 1. 1일부터 시행한다.

다만 이고시 시행이전에 이미 형식승인갱신을 위한 시험의뢰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